

의안번호	2208524
의 퇴 인	백선희 의원
회 답 일	2025.05.26.
추계번호	25C1137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0조의4 (교직원에 대한 긴급 조치)	(제3항)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해 필요한 경우 교육, 의료, 사회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다.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0조의4 (교직원에 대한 긴급 조치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교직원의 이상행동이 감지될 경우 학교장이 교직원을 학생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도록 하고,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, 의료, 사회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
 - 안 제20조의4제1항은 학교장의 분리조치 권한에 대한 규정이고, 동조 제2항은 학교장이 제1항의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유발하지 않음
-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분리조치된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, 의료, 사회서비스 등을 지원함에 따른 재정지출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 범위 및 규모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워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곤란함

- 안 제20조의4제3항은 교육감이 분리조치된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, 의료, 사회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그러나 개정안에 따른 지원이 교육감의 재량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원의 범위를 특정하기 어렵고, 구체적 사안에 따라 지원의 정도 역시 달라질 수 있어 개정안에 따른 비용을 산출하기 어려움
 - 현재 유사 사업으로 「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」 제29조에 따른 교육활동보호센터 및 연계기관¹⁾을 통해 교육부와 시·도교육청의 심리상담, 예방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
 - 구체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경우 마음선(先) 개인심리상담²⁾, 마음생(生)개인심리상담³⁾, 마음행(行) 개인심리상담 및 초기 치료비용 지원⁴⁾ 등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
 - 참고로,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실시를 규정한 「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」이 2025.9.19. 시행될 예정임⁵⁾

□ 이에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-
- 1) '24.9.1.기준, 상담기관 1,191개소, 심리치료기관 218개소가 운영 중임
 - 2) 교육활동 중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소진교원에 대하여 심리상담 8회(1회 50분) 지원
 - 3)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안으로 지원이 시급하여 학교장이 요청하는 경우 마음 건강 회복과 치유를 위한 심리상담 10회(1회 50분) 지원
 - 4) 개인 심리상담 지원을 받은 교원 중 자살위험성을 보이는 교원에 대하여 추가 심리상담 5회와 정신건강 의학과 치료비용 5회(각 50만원 이내) 지원
 - 5) 「교원지위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2202396호)

제29조의2(교원의 정신건강 증진) ① 교육감은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(이하 “정신건강증진사업”이라 한다)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 1. 정신건강 상담·검사·치료비용 지원
 2. 정신질환 예방·치료·재활 프로그램 운영
 3. 정신건강 관련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
 4. 정신건강증진사업 대상자의 권익보호 및 조직 내의 편견 해소
 5. 그 밖에 교육감이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교육감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교육감은 위탁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 교육감은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정현수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정현수	02-6788-4627	jhs@assembly.go.kr